

원·하청 교섭에서 임금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교섭의제가 될 수 있습니다.

1. 관련 기사

- 3.11.(수) 연합뉴스, “노란봉투법 첫날 하청노조 407곳 교섭 요구…원청 221곳 대상”
문화일보, ““원청이 하청임금 결정, 근거 있다면 교섭 대상”” 등 다수 기사

- 정부 언급에 혼란 가중 우려
- 노동부는 이날 임금도 교섭 의제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.

2. 설명 내용

- 정부는 임금에 관하여 원청이 실질적·구체적으로 지배·결정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교섭 의제가 될 수 있음을 밝힌 것임
- 즉, 임금은 근로자에게 제공한 노동의 대가이고 그 지급과 인상 등은 계약당사자인 계약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발생·결정되는 것이어서 특별한 근거가 없는 한 교섭대상이 아니지만,
 - 원청이 하청노동자의 임금수준 등을 구체적으로 결정하는 등 실질적·구체적 지배·결정을 했다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사용자성이 인정된다고 설명한 것임
 - 이는 새로운 내용이 전혀 아니며, 지난 2월 24일에 발표한 「개정 노동조합법 해석지침」에 기재되어 있는 사항과 동일함

〈「개정 노동조합법 해석지침」 中〉

- 임금은 근로자가 제공한 노동의 대가이고, 그 지급과 인상 등은 계약 당사자인 계약사용자와 관련근로자 사이에 발생하고 결정되는 것으로, 개별 사안에서 계약외사용자가 임금에 관하여 실질적·구체적으로 결정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한 임금에 대해 도급인에게 단체교섭의 상대방으로서의 사용자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움
- 다만, 계약외사용자와 계약사용자 사이의 노무도급계약 등에서 관련 근로자의 임금 수준 등을 구체적으로 결정하였다는 근거가 있거나 그에 준하는 정도의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사용자성 인정이 가능

담당 부서	노사협력정책관 노사관계법제과	책임자	과 장	서명석 (044-202-7611)
		담 당	서기관	유현경 (044-202-7609)
			서기관	정장석 (044-202-7615)

